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52호

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신청접수	선정평가
팁스(TIPS)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팁스 운영사로 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2,157억원 (신규 5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24개월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수시	수시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비R&D)	창업사업화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526억원 (신규 525개 내외)	10개월	각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수시	수시
		해외마케팅							

* 자세한 내용(신청자격, 접수일정 등)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2. 주요 변경·개선 사항

□ '22년 주요 변경·개선 사항

< 주요 변경·개선사항 정리 >

순번	구 분	'21년 기존	'22년 개선
1	지원규모 확대	■ **팁스R&D** - 신규 400개 과제 지원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신규 과제 428개	■ **팁스R&D** - 신규 과제 500개 과제 지원 (100개 증가)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신규 과제 525개
2	선정평가 효율화	- 서면평가 및 대면 평가 진행	■ **패스트트랙(팁스R&D)** - 서면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은 대면평가 면제* * 패스트트랙 추천권을 보유·사용한 운영사가 추천한 기업 대상 적용
3	선정평가 전문화	■ **대면평가(팁스R&D)** - 기술성 및 시장성 상관없이 운영사 대표 발표 원칙	■ **대면평가(팁스R&D)** - 시장성은 '운영사 대표 또는 심사역', 기술성은 '창업기업 과제책임자' 발표 가능
4	운영사 투자요건 개선	■ **운영사 투자금 인정기간** - 운영사 투자 후 1년 이내 * 추천마감일 기준	■ **운영사 투자금 인정기간** - 운영사 투자 후 2년 이내 * 추천마감일 기준
5	프리팁스 연계강화	-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참여 기업이 팁스(R&D)에 추천될 시, • 팁스 신청 시 투자금만 인정 * 팁스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 금액 불인정 • 투자 유형에 따른 출연금 매칭 비율 적용	■ **투자금 인정범위 확대** -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참여 기업이 팁스(R&D)에 추천될 시, • 프리팁스 신청 시 인정 투자금액*도 팁스 투자금으로 인정 * 팁스 운영사가 아닌 투자기관 금액 포함 • 투자 유형에 상관없이 출연금 매칭 비율 1:5로 고정

3.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또는 개별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

(1) 팁스(TIPS)

□ 사업 개요

○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 (추가 후속 연계 지원 별도)

팁스 운영사란?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선별하여 엔젤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기업

○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현재 활동 중인 운영사 현황(www.jointips.or.kr, ABOUT TIPS - NEWS) 참고

※ 팁스 운영사는 단순 접수처가 아닌 사업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별·투자하는 기관

□ 지원 규모 : 2,683억원 (연구개발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지원 분야 (자유 공모)

○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디지털·비대면 분야' 등 신성장 육성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붙임2 참조]

* (4차 산업혁명 분야) 23대 분야 178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분야, 104개 품목
(10대 디지털기술 및 비대면 기술분야) 10대, 비대면 분야

□ 지원 내용

< 2022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내용 >

<table>
<tr><th rowspan="3">사업 기간[1]</th><th colspan="4">지원내용</th></tr>
<tr><th rowspan="2">엔젤투자금[2] (팁스 운영사)</th><th colspan="2">연구개발(R&D)자금(A+B)</th><th>연계지원</th></tr>
<tr><th rowspan="2">정부 지원(A)</th><th colspan="2">기관부담연구개발비(B)</th><th rowspan="2">추가연계(지분투자)</th></tr>
<tr><th>현금[4]</th><th>현물[5]</th></tr>
<tr><td rowspan="2">최대 3년</td><td rowspan="2">1~2억원[3]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A)의 최소 20% 이상)</td><td>최대 5억원</td><td>해당금액</td><td>해당금액</td><td>•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이상)
•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이상)</td></tr>
<tr><td>연구개발자금의 90% 이내</td><td colspan="2">연구개발자금의 10% 이상[6]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td></tr>
</table>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기간은 연구개발자금 최대 2년, 연계지원 최대 10개월 이내
2)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고유계정형 1억원 내외, 펀드형 2억원 내외) 고유계정형은 정부 연구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5)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고용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 기술도입비로 부담 가능 (단 R&D 등 사업별 협약기간 동안 중복계상 불가)
6)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0%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연구개발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은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프리팁스에 참여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운영사 엔젤투자금과 프리팁스 지원 당시 인정된 투자금을 합산(단, 프리팁스 지원 당시 인정된 투자금은 전체 先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하여 정부지원금을 산정하고, 운영사 엔젤투자금의 유형(고유계정형, 펀드형)과 관계없이 매칭 비율을 1:5로 고정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보육시설(인큐베이터)은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 공간

□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세부사업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 지원제외

◆ (공통)

①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② 현재 프리팁스 및 팁스-R 수행기업(프리팁스, 팁스-R 종료 후 참여가능)

③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⑦「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3 참조]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기술개발 (R&D)

①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단,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는 가능)

◆ 창업사업화 (비R&D)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은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신청으로 중복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② 창업사업화 사업 이외 바우처사업(세무회계바우처, 비대면바우처, 성장촉진 바우처 등) 및 해외진출 인력채용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가능

③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사업 협약기간 중복시에는 협약 불가

④ 선정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4,5]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참조

□ 선정 절차

○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동시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팁스 신청 및 선정 절차 >



* 통합평가를 미신청한 경우,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별도평가를 통해 선발

**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담기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① 신청.접수 (창업기업 → 팁스 운영사)

○ <u>신청기간</u>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사업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 (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 <u>**신청방법**</u>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및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u>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투자제안은 가능하지만,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u>

②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팁스 운영사 → 운영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기업을 운영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기업 사업분야가 <u>운영사의 전문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u>될 수 있음

○ 운영사가 창업기업 추천 시, 연구개발자금과 함께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을 선택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

* 사업신청시 항목에 표기하지 않거나, 해당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누락시 대상에서 배제

- 다만,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도 사업화 계획 및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이 미흡한 경우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팁스 수행기업(기존 선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별 별도 모집 안내 및 선정절차를 실시 예정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과제관리시스템 등록 (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지원 사업별 과제관리시스템 >

○ 팁스 R&D 과제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2.과제신청 → 단계별 신청 → '온라인과제신청 매뉴얼' 확인가능

○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시스템 매뉴얼 → 매뉴얼목록 → 9.[신규]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사용자매뉴얼" 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③ 사전검토 (전문/운영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④ 선정평가 (전문/운영기관)

○ **서면평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의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평가 후 보완사항을 운영사로 피드백

*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이 미흡한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대면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 패스트트랙 추천권을 보유·사용한 운영사가 추천한 창업기업 대상 적용

○ **대면평가 :** 운영사(시장성)·창업기업(기술성)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면평가 보완사항 등을 검토 및 평가

※ 종합평점 = 서면평가(40%) + 대면평가(60%) + 가점(최대 3점)*

* 가점 : ①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소재 창업기업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2점)
② 내일채움공제 도입·운영 (1점)
③ 신성장 육성 분야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디지털기술 및 비대면) (1점)
④ 프리팁스(Pre-TIPS) 또는 팁스-R(TIPS-R) '성공' 기업 (1점)

⑤ 최종 선정 (전문/전담기관)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R&D) 및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통합평가를 미신청한 창업기업의 경우 아래의 별도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자세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은 [붙임5] 참조)

<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별도평가 절차 >

①신청·접수	▶	②요건검토	▶	③발표평가	▶	④최종선정	▶	⑤협약체결
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전담/주관기관, 창업기업

*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⑥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자금 지급, 연계지원사업 지원 (전문/전담기관 등)

○ **(R&D)**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자금을 지급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자금)** 창업기업-주관기관-전담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후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자금 차등 지원

⑦ 사업수행

○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2~3년간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사업수행 1년 경과 시, 운영사와 전문기관으로부터 연차점검을 실시
그 외, 운영사와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사업비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과제 기간 종료 후 기술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를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경우 향후 '포스트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를 제공

< 사업화 성공요건 >

* 사업화 성공 요건(아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후속 투자유치*, ⑥ 신규고용 20명 이상
* 팁스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인 경우

□ 기술료 납부 : R&D

○ **(납부대상)**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창업기업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창업기업은 운영사의 팁스 추천 시, 연구계발계획서에 사업화 성공 시 예상매출액 및 기술개발 결과물의 비중(기여도)을 직접 제시

* 선정평가 시,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대

-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SMTECH) "기술료 매뉴얼" 참고

○ 기술료 납부방식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을 따름

□ 기타 공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 **법(법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
> ○ **행정규칙 등(고시 등)**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 ○ **기타 관리지침**
> -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 협약·평가 진행 중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 대상 제외(또는 협약해약) 처리

○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투자금, 지분율 등)은 운영사의 투자금 및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 필요

* 단, 팁스 운영지침 내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 방안" 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 이면계약, 차명·가장납입, 대가성 수수료 지급, 부정한 이익의 요구.약속.취득 등 위법·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이 취소됨(운영사 지정 취소 가능)

○ 창업기업은 과제기간 내 청년인력 1인을 의무채용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류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4. 문의처

□ 팁스 지원사업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팁스 사업 (일반문의)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사업부	02-3440-7421
팁스R&D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국번없이) 1357
연계지원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국번없이) 1357
사업 총괄(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창업과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www.smtech.go.kr	

※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및 팁스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팁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사업부'로 문의, **각 지원사업 (팁스R&D, 연계지원사업)**의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 기관**으로 문의

붙임 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2. 전략품목 및 기술분야
3.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4. 팁스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5. 팁스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별첨 1. 팁스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사업계획서